|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사항 처리방법> 개정본 발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3호  조세환경을 개선하고 제반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의 세무 시스템 '팡관푸(放管服)' 개혁 심화 및 조세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세총발[2017]101호)의 취지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사항 처리방법> 개정본을 발표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사항 관리목록 (2017년 버전)](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21)  국가세무총국  2018년 4월 25일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사항 처리방법  제1조 국무원의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한다는 뜻), 방관결합(放管結合, 방임 및 감독의 결합의 뜻), 서비스 개선 요구를 실천하고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사항(이하 '혜택사항'으로 약칭)의 처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혜택사항이라 함은 기업소득세법에 규정한 혜택사항과 국무원 및 민족자치지방이 기업소득세법의 권한 위임하에 제정한 기업소득세 혜택사항을 지칭하며 면세소득, 과세대상축소, 비용확대공제, 가속감가상각, 소득감면, 과세대상소득공제, 세율인하,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다.  제3조 혜택사항의 명칭, 정책 개요, 주요 정책근거, 주요 보관•비치자료, 혜택기간, 후속관리 요구사항 등은 이 공고에 첨부한 <기업소득세 혜택사항 관리목록(2017년 버전)>(이하 '<목록>'으로 약칭)에 따른다.  <목록>은 세무총국이 작성하고 갱신한다.  제4조 기업의 혜택사항 적용은 '자발적 분별, 신고 후 혜택 적용, 관련 자료 보관•비치'의 처리방식을 취한다. 기업은 경영상황과 관련 조세규정에 근거하여 혜택사항 적용 조건 부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목록>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세금감면액을 스스로 산정한 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취합,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이 방법에서 보관•비치자료라 함은 기업이 누리는 혜택사항과 관련된 계약서, 협의서, 증빙, 증서, 문서, 장부, 설명서 등 자료를 지칭한다. 보관•비치자료는 주요 보관•비치자료와 기타 보관•비치자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주요 보관•비치자료는 기업이 <목록>에 명시된 자료 리스트에 따라 준비하고 기타 보관•비치자료는 기업의 혜택사항 적용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이 스스로 보충하고 준비한다.  제6조 혜택사항을 누린 기업은 연말정산 완료 후 보관•비치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정리하여 세무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이 동시에 두개 이상의 혜택사항을 누리거나 특정 혜택사항을 누림에 있어 규정에 따라 각 항목별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혜택사항별 또는 항목별로 보관•비치자료를 취합하여야 한다.  제8조 비법인분지기구를 설치한 거주민기업과 합산납세를 시행하는 비거주민기업의 기구•장소가 혜택사항을 누리는 경우 거주민기업의 본사와 합산납세하는 주요 기구•장소가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보관•비치자료를 취합 및 보관한다. 분지기구와 합산납세 범위에 포함된 비거주민기업의 기구•장소가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혜택사항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분지기구와 합산납세 범위에 포함된 비거주민기업의 기구•장소가 책임지고 보관•비치자료를 취합 및 보관하며, 분지기구와 합산납세 범위에 포함된 비거주민기업은 연말정산 완료 후 그가 보관 중인 보관•비치자료의 리스트를 본사 및 합산납세하는 주요 기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은 혜택사항 보관•비치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법률책임을 진다.  제10조 기업은 보관•비치자료를 기업이 혜택사항을 누린 당해 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이 완료된 날의 익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은 이 방법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혜택사항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혜택사항 관리방식에 대한 무단 변경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12조 기업이 혜택사항을 누린 후 세무기관은 적시에 후속관리를 전개하여야 한다. 후속관리 과정에서 기업은 세무기관의 관리 서비스 수요에 근거하여 규정된 기한과 방식에 따라 보관•비치자료를 제공하여 혜택사항 적용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집적회로생산기업, 직접회로설계기업, 소프트웨어기업, 국가규획에 포함된 중점 소프트웨어기업과 직접회로설계기업 등 혜택사항을 누린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완료 후 <목록>의 '후속관리 요구사항' 항목에 명시된 리스트에 따라 관련 자료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이 혜택사항을 누린 후 혜택사항 적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조정을 실시하고 세금 및 체납금을 보충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업이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관•비치자료를 제공할 수 없거나 기업이 제공한 보관•비치자료가 실제 생산경영 상황, 재무정산 상황, 관련 기술분야, 산업, 목록, 자격증서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혜택사항 적용 조건 부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조작을 행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해당 기업이 이미 누린 기업소득세 혜택을 추징하고 조세징수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2017연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과 그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혜택사항 처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사항 처리방법> 발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修订后的《企业所得税优惠政策事项办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23号  　　为优化税收环境，有效落实企业所得税各项优惠政策，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深化税务系统“放管服”改革 优化税收环境的若干意见》（税总发〔2017〕101号）有关精神，现将修订后的《企业所得税优惠政策事项办理办法》予以发布。  特此公告。  附件：[企业所得税优惠事项管理目录（2017年版）](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21)  国家税务总局  2018年4月25日  企业所得税优惠政策事项办理办法  　　第一条 为落实国务院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要求，规范企业所得税优惠政策事项（以下简称“优惠事项”）办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优惠事项是指企业所得税法规定的优惠事项，以及国务院和民族自治地方根据企业所得税法授权制定的企业所得税优惠事项。包括免税收入、减计收入、加计扣除、加速折旧、所得减免、抵扣应纳税所得额、减低税率、税额抵免等。  　　第三条 优惠事项的名称、政策概述、主要政策依据、主要留存备查资料、享受优惠时间、后续管理要求等，见本公告附件《企业所得税优惠事项管理目录（2017年版）》（以下简称《目录》）。  　　《目录》由税务总局编制、更新。  　　第四条 企业享受优惠事项采取“自行判别、申报享受、相关资料留存备查”的办理方式。企业应当根据经营情况以及相关税收规定自行判断是否符合优惠事项规定的条件，符合条件的可以按照《目录》列示的时间自行计算减免税额，并通过填报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享受税收优惠。同时，按照本办法的规定归集和留存相关资料备查。  　　第五条 本办法所称留存备查资料是指与企业享受优惠事项有关的合同、协议、凭证、证书、文件、账册、说明等资料。留存备查资料分为主要留存备查资料和其他留存备查资料两类。主要留存备查资料由企业按照《目录》列示的资料清单准备，其他留存备查资料由企业根据享受优惠事项情况自行补充准备。  　　第六条 企业享受优惠事项的，应当在完成年度汇算清缴后，将留存备查资料归集齐全并整理完成，以备税务机关核查。  　　第七条 企业同时享受多项优惠事项或者享受的优惠事项按照规定分项目进行核算的，应当按照优惠事项或者项目分别归集留存备查资料。  　　第八条 设有非法人分支机构的居民企业以及实行汇总纳税的非居民企业机构、场所享受优惠事项的，由居民企业的总机构以及汇总纳税的主要机构、场所负责统一归集并留存备查资料。分支机构以及被汇总纳税的非居民企业机构、场所按照规定可独立享受优惠事项的，由分支机构以及被汇总纳税的非居民企业机构、场所负责归集并留存备查资料，同时分支机构以及被汇总纳税的非居民企业机构、场所应在当完成年度汇算清缴后将留存的备查资料清单送总机构以及汇总纳税的主要机构、场所汇总。  　　第九条 企业对优惠事项留存备查资料的真实性、合法性承担法律责任。  　　第十条 企业留存备查资料应从企业享受优惠事项当年的企业所得税汇算清缴期结束次日起保留10年。  　　第十一条 税务机关应当严格按照本办法规定的方式管理优惠事项，严禁擅自改变优惠事项的管理方式。  　　第十二条 企业享受优惠事项后，税务机关将适时开展后续管理。在后续管理时，企业应当根据税务机关管理服务的需要，按照规定的期限和方式提供留存备查资料，以证实享受优惠事项符合条件。其中，享受集成电路生产企业、集成电路设计企业、软件企业、国家规划布局内的重点软件企业和集成电路设计企业等优惠事项的企业,应当在完成年度汇算清缴后，按照《目录》“后续管理要求”项目中列示的清单向税务机关提交资料。  　　第十三条 企业享受优惠事项后发现其不符合优惠事项规定条件的，应当依法及时自行调整并补缴税款及滞纳金。  　　第十四条 企业未能按照税务机关要求提供留存备查资料，或者提供的留存备查资料与实际生产经营情况、财务核算情况、相关技术领域、产业、目录、资格证书等不符，无法证实符合优惠事项规定条件的，或者存在弄虚作假情况的，税务机关将依法追缴其已享受的企业所得税优惠，并按照税收征管法等相关规定处理。  　　第十五条 本办法适用于2017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及以后年度企业所得税优惠事项办理工作。《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所得税优惠政策事项办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76号）同时废止。 |